

[별표 1의3]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 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다. 공연(公然)음란행 위 라. 통신매체를 이용 한 음란행위 마. 카메라 등을 이용 한 촬영 등 행위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2. 성희롱 가.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 인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 희롱 나. 가목 외의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3. 성매매 가. 미성년자 또는 장 애인 대상 성매매 나. 가목 외의 성매매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제2호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6. 제3호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